

의안번호	2213733
의 퇴 인	조배숙의원
회 답 일	2026.1.8.
추계번호	25D569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 임시조치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4,200만원, 2031년 4억 7,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7억 4,200만원(연평균 3억 4,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가정폭력범죄등에 대한 임시조치 통지 비용	242	287	339	401	474	1,742	3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조(목적)	가정폭력범죄 및 교제폭력범죄를 <u>가정폭력범죄등</u> 으로 규정	
2	안 제3조의2(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	법원은 <u>가정폭력등행위자</u> 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 방에 필요한 수감명령 또는 가정폭력등 치료프로그램의 이 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29조(임시조치)	판사는 <u>가정보호사건등</u> 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 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 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안 제40조(보호처분)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 - 가정폭력등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사회봉사·수강명령 - 보호관찰 -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조(목적)	-	
2	안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가정폭력등행위자”에 포함되는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등의 부과건을 추정하기 어려워 추계에서 제외함
3	안 제29조(임시조치)	○	
4	안 제40조(보호처분)	×	“가정폭력등행위자”에 포함되는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건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계에서 제외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와 교제폭력행위를 포괄하여 가정폭력범죄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현행법은 제3조의2¹⁾에서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임시조치 및 통지²⁾, 보호처분³⁾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임시조치에 따른 통지비용에 한정하여 추계함
- 교제폭력 발생 건수는 2020~2023년 4년간 평균 증가율인 15.9%씩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교제폭력 형사입건 건수: 2020~2023년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교제폭력 형사입건건수(A)	8,951	10,538	12,828	13,939	<u>15.9%</u>

자료: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 개정안의 임시조치 시 통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교제폭력 발생 건수에 임시조치가 시행되는 비율과 임시조치 1건당 통지 건수, 통지 1건당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교제폭력행위에 대한 임시조치 건수는 유사 범죄인 가정폭력범죄의 임시조치 시행 건수 및 비율을 참고하여 추계함
- 교제폭력행위 중 임시조치가 집행되는 비율은 가정폭력범죄의 임시조치 시행 비율인 22.6%로 추계기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표 3] 연도별 가정폭력범죄 발생 건수, 임시조치 건수 및 비율: 2021~2024년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평균
가정폭력범죄 발생 건수	52,437	51,023	57,786	51,573	53,204
임시조치 시행 건수	9,625	10,863	12,782	14,791	12,015
임시조치 시행 비율(%)	18.4%	21.3%	22.1%	28.7%	<u>22.6%</u>

자료: 대법원

- 대법원에 따르면 임시조치에 따른 통지는 우편송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정보호사건 1건당 평균 9건의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편송달에 의한 통지 1건당 단가는 2025년 기준 5,280원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⁴⁾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처분 및 상담소등에의 상담 및 교육위탁 처분의 경우 안 제48조(비용의 부담)⁵⁾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등 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에서 제외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11.)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2.3	2.0	1.9	2.0	2.0	2.0	2.0	2.0

-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33) 제48조(비용의 부담)
- ①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 결정 또는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등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가정폭력등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등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등(교제폭력에 한함)에 대한 임시조치 추정 건수는 다음과 같음

[표 4] 연도별 가정폭력범죄등(교제폭력에 한함) 발생 건수 및 임시조치 건수 추정: 2027~2031년
(단위: 건)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가정폭력범죄등 (교제폭력에 한함) 발생 건수	21,701	25,152	29,151	33,786	39,158
임시조치 시행 비율	22.6%	22.6%	22.6%	22.6%	22.6%
임시조치 시행 건수	4,904	5,684	6,588	7,636	8,850

자료: 대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집행하고 이를 통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7억 4,200만원(연평균 3억 4,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임시조치 결정 건수(건, A)	4,904	5,684	6,588	7,636	8,850	-	-
임시조치 1건당 통지 건수(건, B)	9	9	9	9	9	-	-
우편송달 1건당 단가(원, C)	5,493	5,603	5,715	5,830	5,946	-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D=A \times B \times C$)	242	287	339	401	474	1,742	3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